

## 예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5. 1.

예천군의회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-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교복구입비의 지원(안 제3조)

-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1회에 한해 지원

#### 나. 지원 대상(안 제4조)

-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교복을 입는 관내외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
-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예천군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

**다. 지원 금액(안 제5조)**

-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함

**라. 지원 절차(안 제6조)**

-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
-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요건 확인,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·면장에게 결과 통지

**마. 교복구입비 지급(안 제7조)**

-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 지급 및 행정적 지원 가능

**3. 제정조례안**

- 붙임과 같음

**4. 참고사항**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예산조치 : 추후반영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**5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5월 7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murayzzang@korea.kr

## 예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

1. “교복구입비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(이하“학교”라 한다)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. 다만, 사망·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원횟수는 제2조에서 정한 학교의 학생 중 1회에 한해 지원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

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
1. 교복을 입는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
2. 관외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예천군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
**제5조(지원 금액)**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.

**제6조(지원 절차)**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교복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할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·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관할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,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.

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·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교복구입비 지급)** 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, 우편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, 문자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8조(환수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.

<b>(앞면)</b> <b>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</b>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대상 학생 인적사항					
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·여
학교명	중·고등학교          학년				
주소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인(학생 또는 보호자) 인적사항					
성명		연락처		학생과의 관계	
은행명		계좌번호		예금주	
<input type="checkbox"/>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(해당란에 “○” 표시)					
지원여부	지원받음 (          ), 지원받지 않음 (          )			지원받은 금액	원
「예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
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					
신청인(학생 또는 보호자)			(서명 또는 인)		
예천군수 귀하					
첨부서류 : 1. 주민등록등본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시 미제출)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등본 상으로 보호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제출) 3. 교복 구매사실 증명서류(카드영수증, 교육비 납입증명서 등)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관할 읍·면 확인사항					
<input type="radio"/> 지원 대상 학생의 예천군 전입일자 :          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 (확인자 :          인)					

(뒷면)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·초본을 확인하는 것을

동의합니다.  동의하지 않습니다. (해당 박스에 √ 표시)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#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: 예천군청, 학교 등
2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: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입학정보 확인
3. 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 - 학 생: 성명, 생년월일, 학교, 주소(전입일자 포함)
  - 신청인: 성명, 연락처, 은행, 계좌번호, 예금주, 학생과의 관계
4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: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

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천군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

동의합니다.  동의하지 않습니다. (해당 박스에 √ 표시)

※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학 생 : (서명 또는 인)

보호자(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연 락 처 :

관 계 : 지원 대상 학생의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가 필요합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## 중·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추천서

(○○중·고등학교)

연번	신청 학생 인적사항						지원 적합 여부	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(해당란에 “○”표시)		비고
	학년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	입학일자 (전입일자)		일부 지원	수혜 없음	
							적합 부적합	금액 기재		

「예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.

확인자 : ○○ 중·고등학교장    ○○○ (인)

예천군수 귀하

## 【 관 련 근 거 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